

인터넷 환율 서비스 이용 약정서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20. 12. 10

2. 개정 내용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-제2조 (생략)</p> <p>제3조 (약정의 체결 및 해지, 변경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약정의 체결은 서면의 "인터넷 환율서비스 이용 약정서"에 기명날인 하거나, 인터넷을 통해 "인터넷 환율서비스 이용 약정서"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로 전자서명 할 수 있으며, 약정체결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효력의 약정서로 인정합니다.</p> <p>③ -⑤ (생략)</p> <p>제4조 (생략)</p> <p>제5조 (본인의확인)</p> <p>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입력한 이용자 아이디, 접속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가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할 경우, 은행은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.</p> <p>제6조-제7조 (생략)</p>	<p>제1조-제2조 (생략)</p> <p>제3조 (약정의 체결 및 해지, 변경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약정의 체결은 서면의 "인터넷 환율서비스 이용 약정서"에 기명날인 하거나, 인터넷을 통해 "인터넷 환율서비스 이용 약정서"에 동의하고 (삭제) 은행이 정한 인증서로 전자서명 할 수 있으며, 약정체결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효력의 약정서로 인정합니다.</p> <p>⑥ -⑤ (생략)</p> <p>제4조 (생략)</p> <p>제5조 (본인의확인)</p> <p>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입력한 이용자 아이디, 접속비밀번호 및 (삭제) 은행이 정한 인증서가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할 경우, 은행은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.</p> <p>제6조-제7조 (생략)</p>	<p>"공인"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"은행이 정한 인증서"로 용어 수정</p> <p>"공인"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"은행이 정한 인증서"로 용어 수정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